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78

발의연월일: 2025. 4. 9.

발 의 자:백혜련・김기표・정동영

박지원 • 한창민 • 이원택

이수진 • 복기왕 • 강선우

김 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기술을 개발·촉진하기 위하여 5 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·추진하도록 하면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정책으로, 각 기관이 보건의료기술육성이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안 작성단계부터 각 기관의 계획을 면밀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나, 현행법상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.

이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안 작성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2항 중 "종합"을 "조정·종합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	제4조(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
의 수립) ① (생 략)	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	②
앙행정기관의 계획을 <u>종합</u> 하여	<u>조정·종</u>
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「국가	<u>항</u>
과학기술자문회의법」에 따른	
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(이하	
"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"라 한	
다)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	
한다.	,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